

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의안 번호	2390
----------	------

이용균 의원 (더불어민주당, 강북3)

-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용균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최근 물 부족 문제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
따라,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 강화를 위해 절수설비 설치
대상시설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이에 서울시 및 관련 기관
등 설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물절약
문화확산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(안 제2조제1항제3호),
상위법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(안 제6조).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
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